

# 기업지원센터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산학연 협력 친화형 캠퍼스의 구축으로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천대학교 기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기업”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 단위로써 사기업 및 공기업 등 관공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.

**제3조 (소재 및 업무)** 센터는 글로벌 캠퍼스에 설치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해결 방안 모색
- ② 가족기업 모집, 운영 및 관리
- ③ 경영지원, 법률지원, 기술지원, 디자인 지원, 교육지원, 장비지원 등을 위한 관련 조직 구성 및 부서·학과의 협업
- ④ 기업지원을 위한 각 기관과의 조정 및 지원
- ⑤ 기타 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 (센터장)**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

②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 (조직 및 직무)** ①센터에는 기업의 지원 업무를 위한 조직을 둔다.

②전항의 조직은 경영지원, 법률지원, 기술지원, 디자인 지원, 교육지원, 장비지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사무 인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조직에 인원은 센터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는 본교 관련

## 7-1-7~2 제7편 산학협력단

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.

④전항의 조직은 센터의 운영, 유지 및 가족회사 관리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 (구성)**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이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1. 당연직 위원 : 산학협력단장, 산학협력부단장, 산학협력단 팀장
2. 임명직 위원 : 센터장이 위촉한 교원, 가족기업 임직원, 유관기관 전문가 등(외부인사 2명 이상 포함)

**제7조 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- ③가족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⑤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- ⑥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8조 (회의)**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4장 재정

**제9조 (재정)** ①센터의 재정은 산학협력단 지원금, 정부 지원금, 산업체 지원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.

②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.

③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0조 (회계)** 센터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
다.

## 제5장 기타

**제11조**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규정 관리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.

**제12조** 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천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3조**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